

<참 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2005. 8. 4)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계약심의회 운영 규칙」(2002. 2. 18 제정)으로 운영 중인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라 조례로 대체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의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5조)

라.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정 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근거 :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 사유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 표준 조례안·제정안 대비표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기도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도지사는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경기도계약 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